- (6)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인양할 때 사용하는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안전조치 사항은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(KOSHA GUIDE M-81-2011)에 따른다.
- (7) 크레인의 안전조치 사항은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(GUIDE C-48- 2012)에 따른다.
- (8) 해상 작업선, 바지선의 탱크 등 밀폐공간에 출입 할 때는 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2-2012)에 따른다.
- (9) 해상 작업선, 바지선의 탱크 등 밀폐공간의 안전조치 사항은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시행 기술지침(KOSHA GUIDE H-80-2012)에 따른다.

6.3. 축도시공 시 작업안전

- (1) SCP, CDM로 보강된 지반 위에 마운드 형성을 위한 사석 수중 투하작업 시 점 검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사석 적재장소의 지반, 호안 안정 여부
 - (나) 바지선과 적재슈트와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
 - (다) 슈트상태의 안전여부
 - (라) 작업구역내 출입금지 조치 여부
 - (마) 사석 투입위치의 계산방법 수립 여부
 - (바) 사석 투입 작업계획 수립여부
- (2) 잠수작업 시 송기설비의 고장, 호스절단 등으로 산소공급 부족 및 중단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잠수 전 잠수기구 점검사항
 -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 펌프에 의한 공기 송기 잠수작업의 잠수기·송기관 및 신호밧줄
 - 산소통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·송기관·신호밧줄 및 압력조정
 - 잠수작업자가 산소통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압력조정기
- (나) 잠수작업시설(엔진, 콤푸레샤, 예비공기조, 공기청정기, 유량계, 공기호스)를 점